



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

제 1 조 목적

이 약관은 증권계좌개설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카카오뱅크(이하 "카카오뱅크"라 합니다)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용어의 정의

- ① "제휴기관"이란 카카오뱅크와 증권계좌개설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합니다.
- ② "증권계좌"란 본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투자회사에 개설된 증권매매 계좌를 말합니다.
- ③ "은행연결계좌"란 카카오뱅크에 개설된 고객 본인의 실명확인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로서, 고객이 서비스 신청시 지정하여 증권계좌와 별도의 연결관계를 가지는 계좌를 말합니다.

제 3 조 서비스의 종류

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1. 고객이 지정한 제휴기관의 증권계좌개설 대행 및 동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대행서비스
2. 은행연결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제 1 호에서 개설된 증권계좌로 입금하는 자금이체서비스

제 4 조 이용대상

- ① 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대상은 **내국인으로서 만 19 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**으로 합니다.
- ② 제휴기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조건(해당 제휴기관의 임직원 등)에 의해 서비스의 이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서비스의 신청

- ① 고객은 거래를 원하는 제휴기관 및 상품유형을 지정하여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- ② 서비스 신청 시 카카오뱅크에는 신청 고객 본인 명의의 실명확인된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③ 제 1 항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는 개설과 동시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의 실명확인된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에 연결됩니다.
- ④ 고객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1 개에 여러 개의 증권계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일 증권사의 동일한 유형의 증권계좌는 1 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.
- ⑤ 은행연결계좌나 고객 본인에 대하여 압류, 금융사기 등 사고신고가 등록되어 있거나 은행연결계좌로 자금의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, 카카오뱅크나 제휴기관의 전산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제 6 조 증권계좌의 신규 및 실명확인

- 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지정한 제휴기관에 증권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휴기관은 증권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카카오뱅크로 증권계좌번호를 제공합니다. 이때 증권계좌 개설에 따른 실명확인은 카카오뱅크가 대행합니다.
- ② 고객의 실명확인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기본으로하며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합니다.
 1. 실명확인증표 사본제출 :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받아 확인.
이 경우 금융거래시점 및 실명확인시점에 유효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합니다.
 2. 기존계좌 활용 : 카카오뱅크에 개설된 고객 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PIN 인증을 적용하여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
- ③ 카카오뱅크는 제시받은 실명확인증표가 유효한 실명확인증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휴기관에 통보합니다.

제 7 조 증권거래

증권거래는 제휴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래수단에 의해 제휴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고객의 책임하에 하기로 합니다.

제 8 조 자금이체 등

- ① 카카오뱅크는 제휴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이체의뢰 명세를 고객과 제휴기관 간에 정당한 거래에 의한 이체의뢰로 간주하고 별도 확인절차 없이 처리하기로 합니다.
- ② 제 1 항의 이체의뢰를 처리하는 경우, **카카오뱅크가 정한 은행연결계좌의 출금한도 내에서만 출금이 가능하며, 은행연결계좌의 출금가능 예금잔액에는 마이너스 통장방식의 한도 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출금일 현재의 대출 가능금액은 포함**되고, 아직 결제되지 않은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 입금액은 제외됩니다.
- ③ 제 1 항의 이체의뢰를 처리하는 경우, 은행연결계좌의 출금가능 예금잔액이 이체의뢰 명세의 출금 요청금액에 미달하면 이체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

제 9 조 고객정보 제공 동의

본 서비스를 위하여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아래의 정보를 제휴기관에 제공합니다.

1. 증권계좌 개설에 필수적인 고객정보
2.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제휴기관에서 요청한 은행연계계좌에 관한 정보

제 10 조 과실책임

카카오뱅크가 전산조작 착오로 증권계좌로 입금 처리한 전산상 금액이 실제금액보다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1. 고객은 과대계상된 금액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카오뱅크에 통지하여야 하며, 카카오뱅크가 해당 금액을 회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.
2. 카카오뱅크는 제휴기관을 통해 증권계좌에 과대 계상되어 지급된 잔액을 예금청구서나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하여 회수처리합니다.
3. 고객이 증권계좌의 과대계상된 잔액에 근거하여 증권계좌의 거래주문을 한 경우 카카오뱅크와 제휴기관은 실제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근거로 매수한 여탁자산을 반대매매로 회수하여 충당하며, 그로 인한 손실은 카카오뱅크의 책임으로 합니다.

제 11 조 서비스의 해지

- ① 고객 명의의 증권계좌 및 은행연계계좌가 유효한 이상 고객은 본 서비스만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, 증권계좌 또는 은행연계계좌가 상속 등 사유로 타인 명의로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도 동시에 해지됩니다.
- ② 증권계좌의 해지는 제휴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휴기관을 통해 가능하며, 은행연계계좌의 해지는 예금거래기본약관 등 카카오뱅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제 12 조 면책사항

- ① 은행연계계좌 및 제휴기관의 자금정산계좌에 대하여 예금주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·지급의 정지, 압류 등 법적인 지급제한, 거래중지계좌 편입, 예금잔액증명서 발급, 기타 예금주의 사망, 파산선고로 인한 입금·지급 정지 시 **증권계좌의 거래와 관련된 입금·지급도 정지**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② 카카오뱅크는 제 6 조의 실명확인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실명확인증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휴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제휴기관에서는 유효한 실명확인증표가 확인 될 때까지 **증권계좌의 거래를 중지**시킬 수 있으며,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,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.

제 13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

- ① 본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 약관 외에도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, 「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, 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」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② 증권매매등 증권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이 지정한 제휴기관의 증권거래 관련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14 조 약관의 변경

카카오뱅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의 약관의 변경조항을 준용합니다.

부 칙 (2019. 3. 18.)

제 1 조 시행일

이 약관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 (2020. 6. 1.)

제 1 조 시행일

이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 (2022. 9. 26.)

제 1 조 시행일

이 약관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



변경 전·후 대비표 (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)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p>제 1 조 (생략)</p> <p>제 2 조 ③ "은행연계계좌"란 카카오뱅크에 개설된 <u>입출금이 자유로운</u> 예금 계좌로서, 고객이 서비스 신청시 지정하여 증권계좌와 별도의 연결관계를 가지는 계좌를 말합니다.</p> <p>제 3 조 ~ 제 4 조 (생략)</p> <p>제 5 조 서비스의 신청 ① 고객은 거래를 원하는 제휴기관 및 상품유형을 지정하여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 ② 서비스 신청 시 카카오뱅크에는 신청 고객 본인 명의의 <u>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</u>이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. ③ 제 1 항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는 개설과 동시에 고객이 지정한 <u>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</u>에 연결됩니다. ④ 고객은 <u>1 개의</u>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에 여러 개의 증권계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일 증권사의 동일한 유형의 증권계좌는 1 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. ⑤ 은행연계계좌나 고객 본인에 대하여 압류, 금융사기 등 사고 신고가 등록되어 있거나 은행연계계좌로 자금의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, 카카오뱅크나 제휴기관의 전산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6 조 ~ 제 14 조 (생략)</p> <p>부 칙</p>	<p>제 1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 조 ③ "은행연계계좌"란 카카오뱅크에 개설된 고객 본인의 실명 확인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로서, 고객이 서비스 신청시 지정하여 증권계좌와 별도의 연결관계를 가지는 계좌를 말합니다.</p> <p>제 3 조 ~ 제 4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5 조 서비스의 신청 ① 고객은 거래를 원하는 제휴기관 및 상품유형을 지정하여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 ② 서비스 신청 시 카카오뱅크에는 신청 고객 본인 명의의 실명확인된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이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. ③ 제 1 항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는 개설과 동시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의 실명확인된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에 연결됩니다. ④ 고객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 1 개에 여러 개의 증권계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일 증권사의 동일한 유형의 증권계좌는 1 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. ⑤ 은행연계계좌나 고객 본인에 대하여 압류, 금융사기 등 사고 신고가 등록되어 있거나 은행연계계좌로 자금의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, 카카오뱅크나 제휴기관의 전산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6 조 ~ 제 14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대상 계좌 용어 명확화</p> <p>대상 계좌 용어 명확화</p> <p>부칙 추가</p>